



제 318회 국회 (정기회)
제 3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문회 목적 내 실시 및 자정 전 종료 명시〉
■ 이상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16호)

2024.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청문회 목적 내 실시 명문화	2
2. 청문회 자정 전 산회 원칙 규정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상희 · 박덕흠 · 박성민 · 구자근 · 백중헌 · 최은석
박성훈 · 권영세 · 서천호 · 임이자 · 배준영 · 강명구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4. 9. 4.

3. 회 부 일 : 2024. 9. 5.

※ 의안번호 : 36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전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문회의 개최 요건, 절차 및 공개 여부만을 규정할 뿐,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 · 진술 요구로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문회가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청문회 개최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 · 감정인 · 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5조).

Ⅲ. 검토의견

1. 청문회 목적 내 실시 명문화

개정안은 청문회가 청문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후단).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5조(청문회) ① ----- ----- ----- ----- ----- -----, 이 경우 청문회는 청문회의 목적을 달 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청문회는 제13대 국회 「국회법」 전부개정(1988. 6. 15.)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써, 위원회가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의 청취와 증거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열고 있음.

국회의 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의 내용에 따라 그 유형을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려우나, 현행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문회는 개최

목적에 따라 조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 등임. 조사청문회는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청문회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입법청문회는 입법에 필요한 사실 확인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청문회임.

따라서 청문회는 국정 현안 등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진상을 파악·조사하거나 중요한 법률의 제·개정에 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행정권의 비대화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음.

[표-2] 제22대 국회의 청문회 실시 현황

일 시	상임위	청문회명	실시 목적
24. 6. 21.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개정안에 대한 방통위 의견을 듣고, 법률안 심사에 활용
24. 6. 21.	법사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제정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도모
24. 6. 25.	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전세사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 지원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받고 해법 모색
24. 6. 26.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현 의료계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

일 시	상임위	청문회명	실시 목적
24. 6. 27.	환노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듣고, 법안 심사에 활용
24. 7. 19.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1차)	법사위로 회부된 청원의 심사 및 청원 사유로 적시된 사항의 사실관계 확인
24. 7. 26.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2차)	법사위로 회부된 청원의 심사 및 청원 사유로 적시된 사항의 사실관계 확인
24. 8. 9.	과방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1차)	방문진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 여부 조사
24. 8. 14.	법사위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국회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24. 8. 14. ~ 24. 8. 15.	과방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2차)	방문진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 여부 조사
24. 8. 21.	과방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3차)	방문진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 여부 조사

그러나 최근 청문회가 과도한 의혹 및 논란 제기, 막말 공방 등 여야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청문회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법」에 청문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청문회가 청문회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내용을 선언적으로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적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청문회 목적 범위 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해석의 문제는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청문회 자정 전 산회 원칙 규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청문회 개최일 밤 12시까지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

[표-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5조(청문회) <신설>	제65조(청문회) ⑤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일 밤 12시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¹⁾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 혹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을 뿐, 청문회의 산회시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 않아 「국회법」 제49조제2항²⁾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음.

최근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문회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일부 청문회의 경우 자정을 넘겨서도 계속 진행됨에 따라,³⁾ 현행 청문회 진

1) 「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5일 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국회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제22대 국회에 실시한 청문회 중 20204. 8. 14.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최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2차)”가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 2시경까지 진행되었음.

행방식이 증인·참고인 등에게 과도한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야기하여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청문회를 밤 12시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에만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충실한 심의·조사와 증인 등에 대한 보호 간에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자정을 넘겨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데, “합의”는 협상 당사자 모두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는 “협의”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자정을 넘겨서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요구될 경우 의사진행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성 제고 효과가 기대되나, 절차의 엄격성으로 인한 효율적인 청문회 운영이 저해될 소지도 있으므로, 도입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의석배정,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및 의사일정 변경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로 정하도록 하는 등 국회 운영의 주요사항과 관련하여 “협의”하는 것을 원칙⁴⁾으로 하고 일부 예외

4) 1998. 6. 13. 「국회법」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는 원칙임.

적인 경우에 한하여 “합의”를 거치도록 규율하고 있음.

[표-4] ‘협의’와 ‘합의’의 개념 및 「국회법」상 용례 비교

구 분	협 의	합 의
개 념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 등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 등과 국회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는 절차를 의미	협상 당사자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
성 격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치면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봄	협의를 달리 합의는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여야 함
용 례	-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협의(의석배정,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회의 비공개, 의사일정 변경 등) - 의장이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협의(정보위원회 위원 선임 또는 개선) -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 회기전체 의사일정 작성) -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위원회 의사일정, 개최일시) - 소관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협의(연석회의 개최) - 위원회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합의(심사기간 지정요건, 안건의 신속처리 미적용, 예산안 등 자동부의 미적용,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가실시 등) -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의안 등 자동상정 미적용,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 90일 이내 별도지정 등)

자료: 「쉽게 풀어쓴 의회용어」, 국회사무처, 2018.7.

문 의 처
02)6788-5015